

따라서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확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삭제 요청이라는 요건 등에 의해서만 포털의 책임을 인정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기사제공언론사라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명백하게 존재하는데도 포털에 위험책임, 보상책임의 법리로써 사실상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 만일 피해자의 충분한 피해 구제를 위해 포털의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 공작물의 소유자책임처럼 직접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로소 2차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거나 사용자 책임처럼 직접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는 등 직접 가해자가 아님에도 사회적 필요상 가혹한 책임을 지는 부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포털의 경우 언론사와 동등한 별개의 책임주체로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유사 법리에 근거한 책임들에 비하여 더욱 가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포털의 주의의무 위반의 요건들은 더욱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사회자 : 대법원 판례 등 포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포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일반적 논의는 이미 시기가 지난 감이 있다. 결국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에서 몇몇 요건을 제시한 것처럼 어떤 경우에 포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로 옮겨 갈 필요가 있다.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포털에 책임을 지우는 경우를 적절히 선별해 내고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조정중재 실무에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벌써 예정된 시간을 많이 지났다. 잠시 휴식 후 다음 세션을 진행하겠다.

Ⅲ. 제2사례 토론내용

사회자 : 그럼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다. 첫 번째 세션의 사례를 통해서는 주로 초상권 침해와 포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었던 반면, 이번 사례는 명예훼손 내지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당사자의 동의 유무와 적정한 위자료 수준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례이다.

해당 기사는 한 남성이 딱한 처지의 여자 친구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고 선물도 사 주다가 헤어진 후에는 서로 고소하는 지경에 이른, 연인이던 남녀가 앙숙으로 변한 이들의 연애사를 기사화한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해 해당 남성이 먼저 위원회

에 조정을 신청해 실제로 1백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고, 그 이후 여성도 3백만원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 여성은 기자와 인터뷰한 것은 사실이나 인터뷰 내용이 자신의 사적인 사안이며 심지어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사화되는 것에는 동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사에서 비록 자신을 가명으로 처리했으나 실명에서 자음 하나만 바꾼 것에 불과하고 대학생이라는 신분과 실제 나이를 적시해 자신이 특정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사는 가명이라고 하지만 신청인의 실명에서 자음 하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남자 친구의 실명 역시 이와 동일하게 처리했다. 이에 대해 언론사측은 답변서를 통해 해당 기사가 그녀의 입장에 의거해 작성되었으며, 그녀가 기자와 만나서 취재에 응한 것은 명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사의 논조가 그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남자 친구와 분쟁 관계에 있는 그녀를 대변하는 내용이며, 그녀가 정정보도 청구가 아니라 금전적 청구만 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이번 세션에서 다룬 사례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을 설명해 드렸는데, 참석자들께서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민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인은 비록 취재에 응했지만, 기사화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기사 게재에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언론사는 신청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신청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취지의 보도라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신변이 노출되고 비난에 가까운 질타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것이므로 신청인이 만약 기사화 될 것을 알았다면 취재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해 보이며, 기자의 인터뷰에 응한 사실만으로 기사 게재에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사안의 경우 신청인의 동의가 양해되는 공익성이 있는 기사도 아니므로 언론사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

곽경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취재나 기사작성, 익명성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기 위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보도가 된 것을 전적으로 기자의 잘못으로 보기에에는 무리가 있다. 기사에 적시된 세세한 내용들은 고소장만 보서는 알 수 없고 정황상 신청인이 기자에게 말해 줬을 것이라 보여진다. 즉 기사 작성 과정에 신청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비록 신청인은 기사화될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기자의 신분임을 밝히고 한 대화는 당연히 취재임을 예상하고 보도 가능성 또한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청인은 취재에 응

하면서도 보도하지 않을 것을 부탁했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취재관행을 비롯해 기자가 취재원의 이러한 부탁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현실적으로 기사화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또한 앞서 공익성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정치나 경제 분야와 같은 공익성이 높은 경성 뉴스가 아니라 이번 사안과 같은 공익성이 낮은 연성 뉴스라 해도 국민의 알권리는 여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기사로 인해 신청인의 사생활 침해가 있었던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기자만의 잘못이 아니므로 언론사가 면책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 양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을 모두 들어 보았다. 저도 가끔 기자들의 전화를 받는데, 전화를 받는 입장에서는 나의 발언이 반드시 기사화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나 기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자 신분임을 밝혔으니 내가 보도에 동의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입장에 따라 시각 차이도 존재하는 것 같다. 현직에 계시는 기자분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의견을 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

성연재 (연합뉴스 차장) : 사건 기자는 팩트만 보도하면 되는데, 이 사안의 기사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하다. 대표적인 것이 '발그레 물들었다' 는 등의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기사에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시대가 변한 만큼 이러한 양태의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

엄민우 (파이낸셜 뉴스 기자) : 저도 취재시 전화통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취재원과 전화통화 말미에는 항상 '말씀을 참고해서 기사를 작성하겠다'라고 말을 한다. 이처럼 동의를 구한 후 팩트를 바탕으로 기사를 쓴다면, 그 내용의 구성이 취재원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용인되어야 한다. 특히 비판이나 고발기사는 취재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기사가 게재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까지 모두 제재를 가한다면 업무 현장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사회자 : 다양한 의견에 감사드린다. 한편 이번 사례에서는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연을 기사화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익명처리 등을 통해 철저하게 자신이 특정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취재에 협조한 것이라 볼 여지도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광형 (뉴데일리 팀장) : 언론사나 신청인 모두에게 과실이 있어 보인다. 보통 처음 기사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의 실명을 표시하고, 기사를 게재하기 전 데스크와 논의

해 익명 처리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 이번 사례의 기사와 같이 실명과 유사한 가명을 사용한 것은 아마 업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또한 기사 내용이 다소 선정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언론사의 책임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사 목적과 그 기사로 인해 누가 이익을 봤는가를 고려해 봐야 한다. 본 기사는 주로 신청인의 입장에서 쓰여 졌고, 신청인이 취재에 응한 점으로 볼 때 자신의 억울함을 기사화하여 이전 남자친구가 이 기사를 보고 반성하게끔 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은 철저히 숨겨 달라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다. 기자의 인터뷰에 응한 순간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각오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신상정보가 노출되었고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의적인 측면에 어긋난다. 또한 일반적인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의 청구액이 너무 낮은 점으로 인해 신청인의 의도가 의심된다.

사회자 : 실제 이번 사례의 언론사에서도 신청인이 정정보다나 반론보도는 청구하지 않고 금전적인 손해배상만을 요구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 정도에 비해 청구 금액도 지나치게 낮아 신청인의 의도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다.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

김바울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정보다나 반론보도가 아닌 손해배상 청구만 한 것으로 인해 신청인의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최초 보도로 인해 이미 신원이 노출되고 명예가 훼손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정보다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이 다시 기사화 된다면 신청인의 고통이 더욱 심해 질 것이다. 따라서 정정보다나 반론보도 외 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광형 (뉴데일리 팀장) : 정정보다 등을 통해 사안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 부담된다면 최초 기사를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을 두고 왜 손해배상만 청구한 것인가를 지적한 것이다.

사회자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실제 조정에서는 기사 삭제로 합의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신청 단계에서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없다. 그 이유는 기사 삭제청구권이 조정대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기사 삭제나 배포금지, 게재금지 등은 법원의 가치분으로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를 통한 조정에서 기사 삭제로 합의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로

신청이 들어왔다가 위원회 조정절차에서 기사 삭제로 합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례는 언론사가 신청인에게 1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렇다면 이 금액이 합당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보도로 인해 신원이 공개되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면 적당한 수준의 손해배상금은 얼마라 생각하는가.

이정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위자료의 법적 성질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전보라는 의견이 다수이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경우 그 파급력이나 힘의 불균형을 고려하면 사적 제재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위자료에 언론사의 사과의 성격만큼 그 금액이 커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사는 본 사안의 사건처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자극적이고 가십거리로 만들고서도 1백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해결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과도한 위자료 책정으로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도 안 되므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보통 청구되는 위자료를 보면 1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가 대부분이고 평균 1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내려지는데, 판례에서 위자료 산정에 고려하는 요소는 기사의 제목과 내용, 구성, 기사에서 사용된 표현 형식, 기사에서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기사 제보 및 게재 이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언론사의 노력 정도, 기사 게재 이후 언론사의 태도, 기사에서의 원고의 특정 정도, 기사의 게재가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 기사가 게재된 매체의 비중 등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번 사례는 제목 자체가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선정적인 측면이 있고 여러 자극적인 표현이 본문에서 사용된 점에서 공익성과 진실성을 담고 있다기보다 가십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사가 신청인의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해도 상대방인 이전 남자 친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심지어 가명 처리조차 너무나 미흡해 신청인과 그 이전 남자 친구가 누구인지 주변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이 기사를 본 사람이라면 신청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또한 파급력이나 전파력이 큰 인터넷 신문에 게재되어 포털에도 매개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의 평균 위자료 1천만원을 기준으로 남성측에는 5백만원, 여성측은 남성측보다 피해 정도가 더 크다는 점으로 볼때 7백만원의 위자료가 적정할 것이라 본다.

사회자 : 위원회는 2005년부터 손해배상 사건을 처리하기 시작한 이후 적절한 손해 배상액 기준에 대해 항상 고민해 왔다. 재산상 손해의 경우 증거에 따라 손해 여부 판정이 쉬우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에서는 고민 끝에 손해배상 산정 채점표를 만들었는데, 앞서 토론자가 말한 판례에서의 기준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점수를 내고 이에 부합하는 기준액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 채점표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최근에는 가감표를 만들어 시범 운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채점표와 가감표는 참고 자료이며 이에 구속되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가감표는 기준액을 두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따져서 나온 점수를 기준으로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채점표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이처럼 언론중재위원회가 위자료 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석자들께서 이해해 주기 바란다.

실제 이번 사례의 경우 당사자는 1백만원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앞선 토론자는 적정 금액으로 7백만원을 제시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처럼 중재부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적정 금액과 당사자의 합의 금액에서 괴리가 생길 때 조정기관 으로서는 고민이 된다.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 의견이 합치된 금액으로 합의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적정 금액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과연 조정기관이 객관적으로 정의롭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과 당사자의 의견이 차이가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안기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가 쉽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이라고 정의된다. 조정은 재판과 달리 신속하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을 원만히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가장 대표적인 대체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이 아닌 조정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된다는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볼 때 합의에는 필수적으로 자신의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할 것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조정은 비공개절차이므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시정적 기능이 없으며 자칫 약자가 강자로부터 양보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지니고 있다. 즉 조정은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기 아니라 미래지향적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질게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조정이 실질적으로 재판에 비해 약자에 대한 보호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하여 실질적인 보완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사건들을 보면 일반인들이 보편타당하게 생각하는 적절한 손해배상액수에 비해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시장의 실패와 같이 각 당사자의 자율성에 의존해서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각 당사자 사이에서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 때문에 실패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분쟁해결의 자율성만 강조하면 자칫 자율적인 타협을 가장한 분쟁해결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조정기관의 권고나 조정안 제시와 같은 보완적 역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조정과 같은 ADR제도는 지나치게 신속한 해결이라는 사법경제적 측면의 기능적 절차주의에 맹목되어 버린 나머지, 오히려 분쟁 당사자들이 적절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면이 없지 않아서 다수의 시민들이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지 않으려 하면서도 조정과 같은 ADR제도에 대해 큰 선호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중재법에 따른 조정의 경우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조정의 테이블에 앉는 각 당사자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를 위한 교섭에 임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론사의 경우에는 이미 상당한 관련경험을 통하여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사내 법무팀의 법률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신청인의 경우 이러한 언론분쟁에 익숙하지 않으며, 재판이 아닌 조정이라 할지라도 중재부 앞에서 당사자로서 임하는 지위 자체가 자못 고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철저하게 대립 당사자 간의 평등한 법적공방이 이루어지는 재판과는 다르게 보통 대리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없이 조정에 임하는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러한 문제점은 보다 뚜렷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조정이 당사자 간 합의에 기하여 성립된다는 점을 다시 주지해 볼 때 이러한 맥락에서 실질적인 합의와 형식적인 합의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학계에서는 분쟁 내용에 대한 실체적 평가없이 구체적인 조정안도 제시하지 않는 형태를 '알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하려는 의견 또한 일부 존재하는데 이러한 학설의 존재 역시 조정의 이러한 특징과 단점을 해결하려는 방향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정기관으로서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진 나머지 분쟁 당사자가 시간에 쫓겨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화급하게 분쟁종식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사법경제와 본질적 합의에 기초한 정의구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보다 조정의 가치를 높이고 당사자 간 합의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올바른 자세라고 할 것이다.

손수산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과정은 법관이 중재

위원으로 참여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준사법적 성격이 강하고, 이에 따라 다소 강제적, 직권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을 띤 조정절차에서 조정기관이 적정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조정이 사실상 재판적 성격을 갖게 되어 소송과 다를 것이 없어지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 당사자는 조정기관이 제시한 액수에 대하여 대항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가 결국 사실상 조정기관의 판단에 구속되고, 심한 경우 중재부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기준이란 것을 인지하게 되면 당사자가 상대방이 이 액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율적 분쟁해결방식은 말 그대로 실체적 기준이나 정의에 다소 부합하지 않게 되더라도, 법관 등 제3의 판단주체가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소송은 제3자인 법원이 판단 주체가 되므로 당사자 중 적어도 일방은 그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에 그 해결책으로 ADR이 등장한 것인데, 조정기관이 또 다른 제3의 판단주체가 되는 것은 모순이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처분권주의에 기초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할 수가 없는 등 사적 자치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자율적 분쟁해결 수단인 조정에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서 결정된 금액이 어떤 실체적 기준과 다르다고 하여 조정기관이 특정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안혜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소송을 통해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언론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 조정절차를 따를 경우 조정의 경제성, 저렴성, 신속성, 간편성 등으로 용이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록 보다 적은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하더라도 이것이 신청인에게 결코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조정기관이 제시한 금액에 대해 조정이 결렬될 경우 경제적 약자인 신청인은 소송을 준비할 최소한의 비용에 대한 여력도 없어서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보다는 신청인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금액에 대해서라도 합의하여 손해를 전보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조정제도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일도양단식 해결이 아닌, 모든 이해관계인이 자주적으로 참여하여 만족할 수 있는 윈-윈(win-win)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패소의 위험을 안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전보하여 가급적으로 손해가 없었던 상태로 회

복시켜 주는 것이 목적이다. 정신적 손해의 배상액, 즉 위자료는 그 원인이 되는 손해가 정신적, 육체적인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금액의 구체적 계량이 불가능하다. 또한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개인마다 느낄 수 있는 손해의 정도가 다르고 따라서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맞는 보상액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특징들을 통해 야기될 수 있는 혼란과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적인 방법으로 재판관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공평의 관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를 통해서 개인이 결정한 손해배상금액에 대하여 타인 혹은 사회의 기준으로 더 높은 금액을 권고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회복을 위해 받아야 할 위자료 그 이상을 받도록 유도하는 격이 된다. 이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의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서 적용한 것이다. 당사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결정한 손해배상금액은 고정화된 실정법규와 현실과의 괴리를 보완하는 조정제도의 법창조적 기능을 실현하는 길일 것이다.

한편 조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조정기관이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율과 이용만족도가 매우 높고 조정기관 및 절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ADR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고 언론중재법상 조정의 신속한 진행 및 종결이 규율되어 있어서 철저한 증거조사가 어렵고 따라서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 불투명하다. 따라서 조정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와는 다른 손해배상액을 권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증거조사절차를 보완하고 조정기관의 조정 및 협상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조정에 있어서의 보다 적극적인 조정기관의 개입방안을 다시 고려해 보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

사회자 :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언론사에 대해 징벌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도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서는 실무자의 고민이 가장 클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실제 조정 과정에 참여하는 조사관과 실무부서 팀장이 참석해 있으니, 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류석창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 : 위원회는 법원과 달리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인지대를 받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신청인은 원 단위에서 수억 원까지 자유롭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막상 심리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쉽게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이처럼 반드시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의지를 가진 신청인이 드물고,

오히려 정정이나 반론보도 등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최초 청구액 자체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다. 법률상 위원회가 인지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의 부담을 경감하여 쉽게 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로는 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신청인의 의지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제도의 상징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지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은영 (언론중재위원회 조사관) : 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가급적 약자인 신청인 입장을 존중하려 많이 노력한다. 그러나 중재부가 정의 관념에 따라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언론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부가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이의 신청 시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부담감이 있다. 따라서 중재부는 신청인에게 원하는 수준의 금액을 언론사가 거부하는 경우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언론사의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진행됨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신청인이 소송을 통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금액을 받아야 함을 원한다면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으로도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이처럼 중재부는 조정 이후 절차에 대해 신청인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신청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회자 : 손해배상 합의 금액만 두고 보면 더러 미흡한 결과로 보일 수 있으나, 중재부로서는 금액뿐 아니라 이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신청인의 의지 등 여러 상황까지 고려해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고충이 있는 것 같다.

조광형 (뉴데일리 팀장) : 신청인과 언론사 모두의 입장에서 언론조정중재제도는 큰 이득이다. 언론보도로 인해 불가피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측 모두 손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누구나 쉽게 조정을 신청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문턱이 낮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다. 해당 보도가 여러 매체에 이뤄진 경우 조정을 통해 신청인이 각각 매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는 금액은 적을지라도 이를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신청인이 금전적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지대 도입 의견에 찬성한다.

김태호 (언론중재위원회 조사관) : 일부 사례의 경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실제 피해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든지, 위원회의 결정문이나 합의문뿐 아니라 단순히 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했다는 것으로써 단체의 홍보,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의 대부분은 중재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된다. 중재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누군가의 불순한 의도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회자 : 누구나 쉽게 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어 무분별한 청구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나, 중재부가 이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잘 거르려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나 오늘 전체 토론회 내용과 관련해 추가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다면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

김어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기자가 조금 더 주의를 하거나, 언론사의 게이트키퍼 시스템이 잘 작동하였다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사안이 많은 것 같다. 제가 기자로 근무할 때 작성한 짧은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다. 첫 번째 기사는 시각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이동식 도서관 버스에 대한 기사이다. 미담 기사이기에 저는 아이들의 실명 공개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데스크에서는 계속 아이들의 실명과 초상권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 이유는 2008년 초 범인이 신문에 난 지적 장애아의 실명과 초상을 파악하고 일반 아이에 비해 유괴가 쉬울 것이라 보고 범죄 대상으로 지목했던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 언론사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의 초상과 실명 보도를 더욱 주의하는 게이트키퍼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사도 미담기사이다. 태권도를 무척 잘하는 여학생이 대학에 합격했으나, 등록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다가 사내 변호사 협회의 도움으로 등록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데스크에서는 이 기사가 미담기사이므로 당사자의 실명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좋은 내용의 기사라 하더라도 이 학생의 불우한 가정사가 기사에 일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익명 처리를 고집했다. 이처럼 기자나 데스크가 취재원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사안이 많을 것 같다.

사회자 :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에 합격했다는 것은 미담기사이지만 개인의 가정사 등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해 익명처리 결정을 했다는 좋은 사례를 제시해 주셨다. 개인적으로 언론사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위원회에 신청되는 사례들을 보면 단순한 과실 때문인 경우가 많다. 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참석자들께서도 본인의 생각과 다른 관점에서의 의견을 듣고 검토할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한다. 조사관들께도 오늘 참석자들의 좋은 의견을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오늘 토론회를 마치기 앞서 가장 직접적으로 조정예 관여, 사건을 처리하고 계시는 중재위원님으로부터 오늘 토론회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으면 한다.

한박무 (대전중재부 중재위원) : 기사화되는 사안이 과거에 비해 많이 변했다. 제가 언론현장에 있던 시절에는 차량이 별로 없었기에 교통사고가 큰 이슈가 되었으며, 연탄가스로 인한 질식사고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반드시 현장사진을 첨부해 기사화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사안이 대중의 관심사가 아니다. 최근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치킨을 구매하기 위해 이른 시각부터 줄을 서 있는 장면을 촬영, 기사화했더니 시민 중 한명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이처럼 시대가 바뀌면서 기사의 가치나 내용이 변했고 초상권이나 인격권 등에 대한 문제의식도 생겨났다. 오늘 토론회는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토론회 진행 방법을 벗어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현직 기자들과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자, 미래의 법조인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함으로써 더욱 의미가 컸다고 생각한다.

한편, 과거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한 미군이 귀국해 애인과 키스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풀리처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베트남전에서 탄환을 피해 달리는 소녀의 사진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물론 이러한 사진들을 촬영하면서 기사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를 두고 초상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가. 판례에서와 같이 공익성이 뒷받침되고 그것이 우선할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가 많다. 장문의 글보다 사진 한 장이 훨씬 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당사자의 동의 없는 촬영이라 해도 초상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연구가 더 세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권 일 (서울제2중재부 중재위원)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배상, 얼마가 적당할까?”라는 제목에 관심이 생겨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중재부에서 항상 고민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먼저 첫 번째 사례의 경우 기사가 초상권 침해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김정일 사망이라는 중대 사안에서 그간 전례에 따라 초상을 공개한 것이라 보이나, 당사자가 피해를 주장하므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모자

이크 처리를 하였다면 초상권 침해는 아니라 할지라도, 독자들이 신문을 볼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언론사는 조금이라도 좋은 사진을 촬영해 독자들에게 보여 줄 의무가 있고, 독자는 명확한 사진을 볼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모자이크 처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 제기되는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독자들에게 좀 더 선명하고 좋은 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언론사의 책임이므로 초상권과 관련해서는 작위성이나 고의성이 없다면 언론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두 번째 세션에서 다뤄진 사례는 제가 속한 중재부에서 담당하던 사건으로, 조정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신청인은 해당 기사의 제보자로 경찰조사와 별도로 경찰서에서 기자의 취재에 응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1백만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금액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부 소규모 매체 입장에서는 손해배상금액에 굉장히 민감하다. 심지어 몇몇 언론사는 정정보도문을 더 크게 게재하겠으니 손해배상액은 줄여달라고 사정하기도 한다. 소규모의 영세한 언론사의 경우 소액일지언정 경영상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해당 기자에게 떠넘기기도 한다. 거시적으로 볼 때 이런 점에서 언론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중재부의 손해배상액수 결정 과정에는 굉장한 고민이 요구된다.

개인적으로는 언론 종사자들에게 기사작성 등 전반적인 교육을 깊이 있고 폭넓게 시켜, 기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통해 기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무수히 많은 언론매체가 생겨나 언론인의 숫자가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언론인의 자질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다. 언론사의 자체적인 교육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언론계의 이익이 되리라 본다.

사회자 : 장시간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위원장님 총평으로 마무리 하겠다.

IV. 위원장 총평

권 성 (위원장) :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 수고한 사무처 임직원들과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한 로스쿨 학생들과 일선 기자분들, 포털사 관계자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린다. 또한 국내 굴지의 언론사에서 장기간 근무하셨던 경륜을 바탕으로 고견을 주신 두 분 위원님들의 참석으로 오늘 토론회가 더욱 빛났다.